
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-1408호

변동 9구역(변동458-31번지 일대)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

‘변동 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’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」 제2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일

강 북 구 청 장

1. 공람기간 : 2024. 11. 1. (금) ~ 11. 15. (금)

2. 공람장소

-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, 5층)
- 변동 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(강북구 한천로143길 24, 2층)

3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명 칭: 변동9구역(변동 458-31번지 일원) 가로주택정비사업

4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: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58-31번지 일대
- 면 적: 4,946.08㎡

5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조합의 명칭: 번동 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: 마철호)
- 사무소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3길 24, 2층

6. 조합설립인가일 : 2023. 03. 28.**7.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**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의2(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) 제1항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
-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4호 ‘번동2지역(번동 454번지 일대)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’의 내용에 따라 번동 7,8,9구역 통합 시행을 위한 조합 해산 신청

8. 의견제출

- 의견제출 및 문의: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(☎02-901-2573)
- 본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은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